

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
공유재산관리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 호 식

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12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2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2016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(구)중앙초등학교 부지에 『충청북도의회 청사』 건립을 추진하였으나,
-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도의회로부터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하주차장 건립 확대 요청 및 시민단체의 도민소통 공간조성 요청과 함께 충북도청 청사의 행정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제2청사 건립 필요성이 있어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<재산의 취득>

구 분	당 초 (도의회 청사 신축안)	변 경 (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안)
위 치	·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8 (문화동 4번지)	·변동없음
사업기간	·2016년 ~ 2021년	·2016년 ~ 2022년
규 모	·16,161㎡ (지하 1층, 지상 5층) ※의회동 7,837㎡ 지하주차장 8,324㎡(252대)	·28,700㎡ (지하 2층, 지상 5층) ※의회동 9,000㎡ 지하주차장 14,900㎡(450대) 제2청사 4,800㎡
사 업 비	·430억원(도비 120, 기금 310)	·668억원(도비 358, 기금 310)

5. 검토의견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도의회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
 - 첫째, 사업기간을 2016년~2021년까지에서 2016년~2022년까지로 변경하며,
 - 둘째, 사업규모에 있어 의회동 7,837㎡를 9,000㎡로, 지하주차장을 8,324㎡(252대)에서 14,900㎡(450대)로 변경하고, 4,800㎡ 규모의 제2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,
 - 셋째, 사업비를 430억원(도비 120억, 기금 310억)에서 668억원(도비 358억, 기금 310억)으로 변경하는 것임.

- 도의회청사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, 의회동과 제2청사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, 도의회청사 변경의

건인 만큼 사전에 도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. 끝.